##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88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윤호중ㆍ이학영ㆍ이기헌

강선우 • 이병진 • 안태준

김영환 · 정준호 · 임호선

민병덕 · 조승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 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 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된 인근 지역에 신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신규개발사업이 인근 지역 광역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신규개발사업의 면적과 수용인원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서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 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민들 의 광역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6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사업"을 "사업(이하 "국가시행사업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시행 중인 지역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없는 경우로서 인접하여 시행되는 국가시행사업등과 합한 개발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      |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 |
| 역교통 개선대책) ① (생 략)      | 역교통 개선대책) ① (현행과  |
|                        | 같음)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 ②                 |
| 따른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
|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       |                   |
| 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        |                   |
| 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                   |
|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                   |
| 수립할 수 있다.              |                   |
| 1.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      | 1                 |
| 가・승인 또는 인가(허가・승        |                   |
| 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        |                   |
|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        |                   |
| 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u>사업</u> | <u>사업</u>         |
| 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 (이하 "국가시행사업등"이라   |
|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 한다)               |
|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                   |
|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③ ~ ⑤ (생 략) <신 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이 5 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개 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시행 중 인 지역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 없는 경우로서 인접하여 시 행되는 국가시행사업등과 합한 개발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 상인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 지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